



알기 쉬운 보험용어

글 장태호 KPFA 계몽홍보팀 대리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신문기자나 아나운서들도 가끔씩 혼동하기도 하는 '보험용어'는 몇몇 단어만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많이 쓰이는 보험용어 중 헛갈릴 수 있는 용어와 보험가입 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보험료 vs 보험금

쉽게 표현해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이 보통 지불하는 돈은 전기료, 수수료, 통행료 등이며 받을 돈은 현금, 미수금, 착수금 등이 대부분 쓰인다고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이며,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 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혼동하는 표현이며,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종종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2. 무배당 vs 유배당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될 보험금, 자산운용에 적용하게 될 미래의 이자율, 미래의 회사운영 경비 등을 예측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료의 산출기초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이다. 그런데 이처럼 보험료는 예정기초율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제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과 예정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정기초율과 실제기초율의 차이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배당금이라 하며, 이러한 계약자 배당을 실시

하는 보험을 배당보험이라고 한다. 반대로 무배당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는다.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상황이 양호하여 보험상품의 운영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계약자 배당이 없는 무배당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무배당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대부분 재물보험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무척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쉬운 용어이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가액은 내 재산의 가치(보통 시가)이며 보험금액은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내 집의 가치가 시가 평가를 했을 경우 1,000원이라면 이는 보험가액이고, 이를 보험에 500원으로 가입을 했을 시 이 500원은 보험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가액을 법률상 최고보상한도액으로 보험금액을 계약상 최고보상한도액이라고도 한다. 즉 시가가 1,000원인 내 집을 1,500원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인 1,000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보험, 이하일 경우 일부보험이라고 한다. 초과보험일 경우에는 이를 안 시점부터 보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부보험일 경우에는 사고 시 손해액의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의 비율만큼 보상하게 되며 이를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가 더 자주 접하는 인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이 없다. 이는 인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통상 무한대이며(즉,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취급할 수 없음) 따라서 생명보험 등에서는 보상액을 정하여 사고 시에 이 금액을 보상한다. 이를 정액보험이라고 한다.

4. 계약자 vs 피보험자 vs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즉,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계약당사자가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납부의 의무, 계약해지의 권리 등 보험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피보험자의 피는 한자로 被(입을 피)이며 보험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어머니는 보험계약자이며 아들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수익자는 통상 인보험(생명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이는 계약 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 재물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을 하게 된다. ㉞